

# 헛개 · 음나무 등 약용류 포함 밀원수 국유림 대부사업 이용 가능할 전망

- 양봉협/밀원수 협회, 산림청에 건의
- 법률 개정 통해 국유림 사용범위 확대

양봉농가도 국유림대부사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

한국밀원수조림육성협회 이경준 회장은 지난 4월 16일 ‘밀원수’를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하여 양봉인들도 국유림대부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 건의하였다.

이에 산림청은 회신을 통해 ‘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’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며 법률이 개정되면 헛개 나무, 음나무 등 약용류에 포함되는 밀원수의 재배가 국유림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.

현행 국유림 대부사업은 ‘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관한 법률’ 제 21조 제1항 제7호의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중 ‘버섯류·산나물류 및 약초류

재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’로 제한하고 있다.

개정(안)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중 ‘버섯류·산나물류 및 약초류 재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’에 [약용류 재배용]을 추가하여 국유림 사용허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. **양봉**

 <b>산림청</b> <small>MINISTRY OF FORESTRY</small>	<b>산림청</b>	
수신자 (경유) 제목	한국밀원수조림육성협회장 귀하 (우137-878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621-19 제2축산회관 4층) 민원회신	
안녕하십니까? 평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신에 감사드립니다. 귀 협회에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.		
우리청에서는 금년도에 국유림활용 확대를 통한 농·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국유림의 사용허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법률」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		
□현행 ○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법률」 제21조 제1항제7호의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중 ‘버섯류·산나물류 및 약초류 재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’로 제한		
□개정(안) ○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중 ‘버섯류·산나물류·약초류 및 약용류 재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’로 「약용류재배용」을 추가하여 국유림 사용허가 범위를 확대		
※헛개나무, 음나무는 약용류에 포함되므로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귀회에서 건의하신 내용은 해소될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. 끝.		